의안번호	제 216호
의 결 연 월 일	2019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19년 7월 1일

법무혁신담당관 심사를 마침

충청북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

의 안 번 호	216

제출연월일 : 2019년 7월 1일
제 출 자 : 충 청 북 도 지 사

1. 제안사유

○「자연재해대책법」제4조제5항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위임하던 조항이 대통령령으로 개정됨에 따라 법률적 위임근거가 없어 본 조례를 폐지

2. 주요내용

○ 충청북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

3. 의안전문 : 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해당 없음

5. 관계법령 발췌 : 붙임

6. 비용추계서 : 해당 없음

충청북도조례 제　　호

충청북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

폐지조례안

충청북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를 폐지한다.

부　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현 행 조 례

□ 충청북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

제1조(목적)이 조례는『자연재해대책법』제4조제5항에 따른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정하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(이하 “검토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·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5. 10. 2>

제2조(위원의 위촉 및 구성)① 검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상 4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필요한 경우 추가 위촉할 수 있다.

② 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은 충청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실·본부장으로 한다. <개정 2006. 12. 22, 2015. 10. 2>

③ 검토위원회의 위원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.<개정 2015. 10. 2>

제3조(위원장 직무)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검토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.<개정 2015. 10. 2>

② 위원장이 위원회를 운영할 수 없거나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<개정 2015. 10. 2>

제4조(기능)검토위원회는『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』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.<개정 2015. 10. 2>

1.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
2.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

3.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

4. 영제6조제2항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 항목

제5조(검토위원회 운영)① 검토위원회의 회의는 제2조에 따라 구성된 위원 중에서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.<개정 2015. 10. 2>

②검토위원회의 운영은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며, 위원장은 접수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협의 요청서중 회의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<개정 2015. 10. 2>

③제2항에 의거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소집일부터 7일 이전에 각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<개정 2015. 10. 2>

제6조(임기)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그 남은기간으로 한다.<개정 2015. 10. 2>

제7조(검토의견 제출) 검토위원회의 위원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요청서에 대하여 제4조의 사항 등을 검토하고,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실무지침서에 의한 검토의견서를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8조(현지조사)① 위원장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로 지정된 위원, 사업시행자, 사업승인기관,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9조(협의의견 반영) 위원장은 서면검토 또는 회의개최 등을 통하여 제시된 검토의견을 종합하여 충청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0조(위원의 공정검토 의무)① 각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대상사업을 협의검토 하여야 할 의무를 지며, 용역 등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검토서의 작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대상사업 협의검토에 참여할 수 없다.<개정 2015. 10. 2>

②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1회 이상 대상사업 협의검토에 참여금지, 위촉 해제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<개정 2015. 10. 2>

③충청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한 경우에는 그 임기에 불구하고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.<개정 2015. 10. 2>

1. 공적·사적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람
2. 개인이나 특정기업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사람
3. 그 밖에 충청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사람

제11조(회의록)① 제5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<개정 2015. 10. 2>

②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 보존하여야 한다.<개정 2015. 10. 2>

제12조(간사)① 제5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진행에 필요한 모든 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.<개정 2015. 10. 2>

②간사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업무를 주관하는 담당과장이 된다 <개정 2006. 12. 22, 2008. 7. 1>

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.

제13조(수당과 여비)검토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『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』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·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<개정 2015. 10. 2>

제14조(시행규칙)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.

관련법령 발췌

□ 자연재해대책법

제4조(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)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(이하 "관계행정기관의 장"이라 한다)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·확정(지역·지구·단지 등의 지정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·인가·승인·면허·결정·지정 등(이하 "허가등"이라 한다)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(이하 "개발계획등"이라 한다)의 확정·허가등을 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(이하 "재해영향평가등"이라 한다)에 관한 협의(이하 "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"라 한다)를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 8. 6., 2016. 1. 27., 2017. 7. 26., 2017. 10. 24.>

②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완료한 개발계획등이 취소 또는 지연 등의 사유로 실효되어 해당 개발계획등의 확정·허가등을 다시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기존의 개발계획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들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완료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로 제1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갈음할 수 있다. <개정 2016. 1. 27., 2017. 10. 24.>

1. 해당 개발계획등의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였을 것
2. 해당 개발계획등에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결과가 반영되었을 것
3. 제4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을 것

③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개발계획등으로 인한 재해 영향을 검토 및 평가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 1. 27., 2017. 10. 24.>

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라 개발계획 등에 대하여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 8. 6., 2016. 1. 27., 2017. 7. 26., 2017. 10. 24.>

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요청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고, **위원회의 구성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** <개정 2013. 8. 6., 2016. 1. 27., 2017. 7. 26., 2017. 10. 24.>

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영향평가등의 수행, 재해의 예방·복구 등 재해 경감업무의 전문성 확보와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방재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. <개정 2014. 11. 19., 2017. 7. 26., 2017. 10. 24.>

⑦ 제1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하는 경우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및 협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이 경우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인 개발계획등의 규모 등에 따라 재해의 예방, 재해 영향의 예측 및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등 협의 관련 사항 및 절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. <신설 2017. 10. 24.>[전문개정 2011. 3. 7.][제목개정 2017. 10. 24.]